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金 泰容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년 2월

釜慶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稅務管理專攻

朴 宰 民

朴宰民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4年 12月 18日

主 審 經營學博士 金 鎮 晁



委 員 經營學博士 洪 在 範



委 員 經營學博士 金 泰 容



## < 목 차 >

Abstract .....	iii
<b>제 1장 서론 .....</b>	<b>1</b>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7
<b>제 2장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b>	<b>8</b>
제 1절 부가가치세 개요 .....	8
제 2절 간이과세제도의 도입배경 .....	12
제 3절 간이과세제도의 내용개관 .....	13
제 4절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	20
제 5절 주요국의 소규모사업자 과세방식 .....	24
<b>제 3장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b>	<b>32</b>
제 1절 과세유형 실태분석 .....	32
제 2절 과세표준 실태분석 .....	34
제 3절 납부의무면제 실태분석 .....	35
제 4절 부가가치세 무신고 실태분석 .....	36
제 5절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 .....	38
<b>제 4장 간이과세제도의 개편방안 .....</b>	<b>43</b>
제 1절 공평과세에 대한 제고 .....	43
제 2절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의무편의 제고 .....	46
제 3절 바람직한 간이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48
<b>제 5장 결론 .....</b>	<b>55</b>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	55
제 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방향 .....	56
<b>참고문헌 .....</b>	<b>57</b>

## < 표 목 차 >

<표 2-1> 사업자의 분류 .....	9
<표 2-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9
<표 2-3> 과세특례제도의 변경 .....	12
<표 2-4>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 .....	14
<표 2-5>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 보유시 간이과세적용배제 .....	14
<표 2-6> 업종별 부가가치율 .....	17
<표 2-7>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20
<표 2-8> 주요국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및 세율 비교 .....	30
<표 2-9> 부가가치세 시행 주요국가 .....	31
<표 3-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변천 .....	32
<표 3-2>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	33
<표 3-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징수액 .....	34
<표 3-4> 납부의무 면제대상의 변동추이 .....	35
<표 3-5> 부가가치세 무신고 현황 .....	37
<표 3-6>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의 처리현황 .....	38
<표 3-7> 1997년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39
<표 3-8> 2002년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40
<표 4-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불공평성 비교 .....	44
<표 4-2>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가치율 대비 .....	45

## < 그림 목 차 >

[그림 3-1]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변동추이 .....	33
[그림 3-2] 납부의무 면제대상의 변동추이 .....	3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under the Value Added Taxes in Korea

Park, Jae Min

*Majoring in Taxation Managem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two basic principles governing tax administration are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se two principles have been developed as conflicting concepts, affecting all the fields such as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ation laws and regulations.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hereafter, STS) under the value added taxes (hereafter, VAT) was introduced for small business taxpayers to perform tax liability easily and for government and taxpayers to get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using a simple procedure. Thus, the current VAT system is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The current simplified taxation system has been created special tax benefit for simple taxpayers because of lower tax rate under the STS. These benefits forced for small business taxpayers to hesitate to become an ordinary tax payer when the revenue level is beyond the small business and to regard them as tax free taxpayers who are always exempted from tax liability.

Simple taxpayers under the current VAT system have less tax liability compared to both ordinary taxpayers under the VAT and salary taxpayers with a similar income level under the Income Tax Law. Thus, there exists a big argument about whether to abolish the current STS in order to keep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 ① to analyze the whole aspects of simplified taxation system under the value added tax and ②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taxation system under the VAT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First, it is not only irrational to assert that we should abolish the current simplified taxation system only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but also irrational to assert that we should keep this system only on the basis of principl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because these two assertions are sometimes conflicting to each other.

Second, since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under the VAT system with current STS, is not effective, we should presuppose the voluntary tax reporting by taxpayers, systemiza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upgrading taxpayers' consciousness. On the contrary, under the VAT system without current STS, because we may have a serious administrative inefficiency problem, we have, therefore, to adopt a new system to take care of small business taxpayers.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troversies,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plans to current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cluding enforcing full disclosure of revenue by a small individual taxpayer through the credit card and/or cash receipt system.

Third, to keep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revise the law to apply this simplified taxation system only to the small business taxpayers who report their tax on time, but not to the small business taxpayers who do not report their tax timely, even if they have

no tax liability under the current simplified taxation system.

Fourth, to keep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law that small business taxpayers should report their tax by annual basis, not by bi-annual or quarterly basis to increase taxpayer's convenience.

Fifth,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is not only important to realize tax justice, but also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important to increase the level of convenience for small business taxpayers and efficiency for tax authorities. When the government tries to revise the tax laws or to implement tax policies, it should prepare important criteria first and compare propositions and then make decision to implement by keeping the two principles in an effective way.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간이과세제도의 개념과 선진국 현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1曆年(달력에 따라 계산한 1년)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즉, 공급대가)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원칙적인 규정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와 납부 및 경정·징수와 환급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한 영세납세의무자로부터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순응(tax compliance)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간편한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附價法 25(1)). 부가가치세법상 이러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sup>1)</sup>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제는 이른 바 ‘유럽형 부가가치세’를 법제화한 것이다.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함으로써 유럽형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 중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소규모사업자<sup>2)</sup> 제도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거의 모든 회원국들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특별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소규모사업자를 연간매출액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중기업에 대해서는 간이납세신고와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절차를 통상적 절차보다 간소화해 주고 있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업에 대한 납세절차에 따라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정한 일괄액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납세순

1) 최병근, 『부가가치세법론』, 서울:(주)조세통람사, 2001, p.453.

2) 본 논문에서 소규모사업자란 행상인 등 영세사업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 발행, 장부작성 능력 등이 문제되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말한다.



응(tax compliance)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리한 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대우의 내용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면제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것, 조세행정상의 협력의무를 면해 주는 것, 세액산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괄액에 의한 납부를 인정해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남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조세의 경쟁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세율과 넓은 과세베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단순한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과세특례제도와 같은 예외제도를 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sup>

## 2.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1曆年の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1曆年の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세합가격)가 4,800백만원 이상 동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附價法 25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부가가치 액에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다음, 다시 이 금액에서 제한된 범위의 매입세액을 다시 차감하여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매출액에 곱해지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결정의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 결정 여하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크기는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세자료 양성화율이 매우 낮은 업종의 경우에는 부과 또는 신고내용상으로는 공급대가기준 4,800백만원에 미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초과

3) 박종수, “유럽연합(UE)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06, pp.187-188

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sup>4)</sup>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제는 장기적으로 일반과세 위주로 나아가고 간이과세 제도는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sup>5)</sup>

### 3. 공평과세원칙과 소규모사업자의 제도간소화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입법상의 조세공평),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세법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 또는 동일조건·동일부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sup>6)</sup>

미국(IRS)은 불공평 원인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의 조세감면, 면제, 공제, 비과세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7)</sup> 이는 현행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예시하는 것으로, 조세제도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특례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세법의 복잡성 때문에 납세자들을 조세제도가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수가 많다. 납세자는 세법이 복잡해질수록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조세이론가나 정책입안자들은 복잡성이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주장하기도 한다.<sup>8)</sup>

4) 박중수, 앞의 연구보고, pp. 197-198

5) 현진권, "탈세요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현황과 개편방향," 한국정책학회회보 제7권 제3호, 1998.

우부신,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방안에 관한 소고," 『동립경영연구』 제2권, 한국동립경영학회, 1995. 등

6) 최명근, 『세법학 총론』, (서울: 세경사 2002), p.105.

7) B. I Bittker, Equity, Efficiency and income tax theory : Do misallocations drive out inequities?, 1980, p.19. 권기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연구: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再引用.

8) V. C. Milliron,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3, No.2, Autumn, 1985, pp. 791-816. 권영모,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제5집, 1993. 再引用.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 금지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질서 속의 부분법질서로서의 조세 평등주의는 그 본질이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의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되어서 조세입법에서는 조세부담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도원리가 된다.<sup>9)</sup>

공평과세에는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각자는 동일한 금액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과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조세부담을 낮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가벼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이 있다.<sup>10)</sup>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 등에서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어 수직적 공평에 대하여는 별 문제가 없으나, 매년 연말정산 때가 되면 같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봉급생활자와 사업소득자 중에 봉급소득자가 훨씬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어 수평적 공평이 문제가 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기반이 되는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특례제도(현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 중에서 비교적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sup>11)</sup> 과세특례제도는 영세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납세협력비용은 높은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진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과세특례제도를 두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과세특례대상자(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액뿐 아니라 소득세의 과세기반이 되는 매출액이 과소 신고되므로 소득세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이중

9) 김완순, 『재정학』, (서울: 법문사, 1978), p.156.

『공평의 원칙은 항상 지배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조세체계의 형성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준임에 틀림 없다.』 최명근, 『세법학 총론』, (서울: 세경사), p.105. 再引用

10) 최명근, 앞의 책, p.108.

11) 앞 1.1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 대부분은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인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제도는 과세특례대상자를 안주시키려는 제도적인 유인책이 되고 있으며, 연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운영세사업자의 실제 매출액을 행정력으로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제도적으로 불투명하며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조세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2)</sup>

#### 4. 간이과세제도 개선의 필요성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성실한 장부기록(기장)을 통하여 매출액을 투명하게 신고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성실한 장부기록이란 간이과세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근거를 누구든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성실 기장의 요건으로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영수증으로 모든 매출 기록을 남기거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을 도입하는 경우와 모든 매출을 장부에 꼬박꼬박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조세형평의 오랜 과제인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으로 평가될 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되지 못한다.

지난 2002년 말 현재 간이과세자는 전체 약 400만명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184만명(46.5%)에 이르는 넓은 세원을 가지고 있으나,<sup>13)</sup> 간이과세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간이과세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sup>14)</sup>의 적용을 배제하고 ‘간편법’<sup>15)</sup>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기본질서를 훼손하

12) 현진권, “탈세요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현황과 개편방향,” 한국정책학회회보 제7권 제3호, 1998, p.374.

13) 한겨레신문, “신용·현금카드 등 매출 성실기록 댄”, 2004. 9. 12.

14)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

15)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단순히 표현한 용어이다.

게 되며, 매입세금계산서의 제출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수  
수질서를 교란시키게 된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와 형평이  
어긋나며, 정확한 담세력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공평과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간이과세자가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최종소  
비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모순과 동시에 이중과세  
의 문제가 발생한다.<sup>16)</sup>

## 5. 연구의 목적

공평과세 실현은 오래 전부터 모든 나라에서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 중요성은 각 나라의 역사·정치·문화·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조세제도의 이념은 크게 '조세부담의 공평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세수입의 확보', '징세의 편의' 등 4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조세수입의 확보나 경제개발 지원측  
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조세부담 측면에서 공평성의 문제가 소홀히 취  
급되었다.<sup>17)</sup>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규모가 영세한 가장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납세의무편의를 도모하고 정부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해 온 '간이과세제도'에 있어서도  
공평성이 상실된 것도 사실이다.<sup>18)</sup>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및 주요 선진국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간이과세제도의 전  
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평과세원칙'과 '납세의무편의'의 상충되는 내용  
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일

16) 윤덕병·성동환, 『부가가치세법』, (대전: 도서출판 대경 2003), p.105.

17) 권기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연구: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1, pp. 7-8.

18) 심현욱, "부가가치세에 관한 소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5권 제1호, 2003년 2월, p.168.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주게 되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서로 상충되는 법과 원칙들을 기준으로 비교분석 연구하는 부분이 미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한 ‘공평과세’ 문제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의무편의’ 문제의 중요성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제1장에서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밝히고, 그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공평과세 측면과 납세의무편의 측면에서의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부가가치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도입과정과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주요선진국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세의무면제 등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제4장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공평과세원칙’과 ‘납세의무편의’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절충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편방안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발전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 제2장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제1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 1. 도입배경과 특징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제에 비해서 매우 젊은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제의 기본착상이 나타난 것은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인 부가가치세제가 정착된 것은 유럽연합(EC)경제공동체의 조세조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1967년에서 1973년 사이에 공동체 회원국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데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sup>19)</sup>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1년에 재무부가 부가가치세 도입을 발표하고, 1976년에 국회에서 부가가치세 도입을 의결하고, 1977년에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완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누적효과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계열화의 촉진을 기하며,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근거과세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이 있었다.<sup>20)</sup>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첫째 모든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며, 둘째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법을 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셋째 최종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는 구입시점에서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며, 수입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넷째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9) 최명근, 『부가가치세법』, 1991. 제4장 박태원, 『조세론』, (서울: 법문사, 2000), p.417. 再引用

20) 박종수,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06. p.30

## 2.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골격

### 1)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재화와 용역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공급 또는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된다.

<표 2-1> 사업자의 분류

구 분	부가세 납세의무	과세유형	세율
사업자	과세사업자(유)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2~4%(실효세율)
	면세사업자(무)		없음

### 2)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①재화의 공급, ②용역의 제공 및 ③수입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수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수출의 경우에도 간접세의 소비지부과 원칙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2-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sup>21)</sup>

구 분	과 세 대 상	과 세 방 법
①재화의 공급 ②용역의 공급	사업자가 공급한 것만 과세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
③재화의 수입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과세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21) 서희연, 『소비세제법』, (서울: 세학사, 2002), p.30



### 3)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당초에는 법률상 기본세율을 13%로 하고 3%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실행세율은 10%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 4) 영세율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진다. 영세율의 적용범위는 수출, 외국에서의 용역제공,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등 외화획득사업이다. 영세율은 전단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면세를 뜻한다.

### 5) 면세

영세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세되나, 면세제도는 당해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으나 그 재화나 용역을 산출하는 전단계까지는 원자재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면세의 취지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염가로 공급하려는 것으로 그 대상은 생필품, 문화 및 의료용역, 국가 및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면세로 하고 있다.

면세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납세의무가 없을 뿐이므로 불완전 면세에 해당한다.

##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문제점<sup>22)</sup>

### 1) 역진성의 문제

부가가치세는 그 과표가 비교적 포괄적이고 특히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22) 이필우·유경문, 앞의 책, pp. 575-576.

역진성이 될 수밖에 없다. 역진성은 면다는 것은 세액이 가격에 100%전가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을 측정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소비지출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기준에서는 역진적인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소비지출기준에서 약간의 역진성을 띠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소비행동에 과세되는 세목으로서 한계소비성이 높은 저소득층이 그렇지 않은 고소득층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울 것이기 때문이다.

## 2)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 조정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공공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면세, 영세율 적용이 불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3) 최종서비스업의 세원탈루

부가가치세는 세액산출에 있어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거래자간에 상호 검증장치가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나, 오히려 거래자간의 상호인멸을 합의한다면 그것은 완전탈세장치로 둔갑되어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부가가치세에서 세원이 탈루되면 그것은 개인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의 근거과세는 공평과세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4) 간이과세자의 세정마찰

직전 1曆年の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의 범위로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매출액이 4,800만원 훨씬 상회하는 상당수가 간이과세자의 범례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 제2절 간이과세제도의 도입배경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당시 과세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 중에서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순응비용을 줄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의 장세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예외 조치였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에게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인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1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 납부액으로 하였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액부징수자로 납부를 면제하였다. 또한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부담도 줄일 수가 있는 이중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과세특례자로 안주시키려는 제도적인 유인책이 되었으며, 실제 연간 매출액을 행정력으로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제도적으로 볼 때 불투명하며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조세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는 간이과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과세특례제도에 서 규정하는 영세사업자보다도 큰 규모의 사업자를 새로운 형태의 영세사업자로 규정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달리 적용하였다.<sup>23)</sup>

<표 2-3> 특례과세제도의 변경

현 행		개 선	
일반과세 (118만명)		일반과세	(172만명)
간이과세 (54만명)		폐지	
과세특례 (10만명)	매출액 4,800만원/연간	간이과세 (10만명)	
소액부징수 (103만명)	매출액 2,400만원/연간	소액부징수 (103만명)	

\* 자료 : 재정경제부, 「'99정기국회제출 세제개편(안), 1999.8

23) 현진권, 앞의 연구논문, p.374.

그 후 <표 2-3>의 내용같이 2000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범위가 연간 4,8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되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으므로 다소의 차이만 있을 뿐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사실상 종전의 '과세특례제도'와 다를 바 없다.

### 제3절 간이과세제도의 내용개관

#### 1. 취지 및 의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체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기가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확정지어야 하므로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지식과 계산능력·기장능력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지식과 조세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적용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기장 등의 측면에서 납세협력의무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켜 주고자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sup>24)</sup>

#### 2.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附加法 25①)

그러나 <표 2-4>와 같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다.(습 74②)

24)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서울: 세경사, 2001), pp. 575-576.

<표 2-4>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

구 분	간이과세 배제업종
거래 단절 방지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부동산투기규제	부동산매매업, 법 소정 부동산임대업
과소비 규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기장,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무능력이 있으므로 <표 2-5>와 같이 2005년부터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였다.<sup>25)</sup>

<표 2-5>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 보유시 간이과세적용배제

종 전	개 정
각 사업장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적용 배제

### 3. 과세유형전환

#### 1) 계속사업자인 경우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曆年の 공급대가가 공급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 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 1과세기간까지로 한

25) 국세청, 『개정세법』, 2004.

다.(습 74의 2①)

과세유형 전환시에는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습 74의2②)

## 2)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로 한다.(습 74의2①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그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 3)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유형의 전환은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초일부터 된다. 그러나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받고자 하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

## 4. 간이과세의 포기<sup>26)</sup>

### 1) 취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매입

26) 오기수·임종은, 『부가가치세법 강의』, 서울: (주)영화조세통람, 2004, pp. 336-337.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재화 등 구입을 기피할 수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서 영세율적용을 받으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제도상의 불이익 등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것이 간이과세의 포기이다.(附加法 30)

## 2) 포기의 절차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附加法 30(1), 습 78(1))

## 3) 간이과세 재적용의 제한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附加法 30(4)).

## 4) 재적용시 적용신고서 제출

간이과세적용 제한기간이 경과되고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재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습 78(3))

## 5. 납부세액의 계산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거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매 출 세 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10%
- (+) 재고납부세액 ..... 과세유형전환시 매입세액공제액의 차액
- (-) 공 제 세 액 .....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차 감 세 액 ..... 부수(-)인 경우 이를 '0'으로 봄
- (-) 기 납부 세액 ..... 예정고지(신고)세액
- (+) 가 산 세 ..... 미등록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등
- 차가감 납부세액

상기의 부가가치율은 <표2-5>와 같이 업종별 해당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차감세액이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부수(-)인 경우 환급을 배제한다.(법 26⑥)

<표 2-6>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 분	연 도	부 가 가 치 율				
		2000년 2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입 및 판매업		20%	20%	20%	20%	20%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20%	22.5%	25%	27.5%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25%	30%	35%	40%

\* 자료 : 국세청, 사업경영과 세금(간이과세자용), 2003, p. 26.

## 6. 경감·공제세액<sup>27)</sup>

27) 양대식, 『부가가치세법 강론』 (서울: 경영과 회계), 2004, pp. 330-331.



### 1) 매입세금계산서 등 제출세액공제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신고시 제출하거나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附加法 26③) 그러나 업무무관 비용,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관련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제할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附加法 26⑥)

\* 일반적인 경우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sup>28)</sup>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연 500만원 한도). (附加法 32의2(1)), 공제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附加法 26⑥)

### 3) 음식점 영위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서 계산한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면세농산물 등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말한다.(附加法 26의3)

\* 의제매입세액공제 = 원재료로 사용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3/103

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8)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는 생략함.

## 6. 가산세<sup>29)</sup>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附加法 28(3),(4))

- ① 미등록 가산세 : 공급대가의 0.5%
-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 및 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 3/10,000
- ④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세표준의 1%
- ⑤ 매입세금계산서 등 결정·경정시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 7. 납부의무의 면제<sup>30)</sup>

①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이 경우 가산세의 적용도 배제한다. 그러나 신고의무는 있으며,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나 다만, 당해 사업자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③ 당해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sup>31)</sup>

29) 함영복,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 경영과 회계), 2004, p.500.

30) 부가가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77조의 2

함영복, 앞의 책, 2004, p.502.

31) 예규 : 납부의무면제 관련 간이과세자의 사업개시일

최초 과세기간의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다. 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일로부터 기산함 (시산 46015-10360, 2001. 9. 27)

## 8. 일반과세자와의 비교<sup>32)</sup>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면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7>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직전1억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 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부가세포함)
세율	10%, 0%	업종별부가가치율×10%, 0%
거래 징수	의무 있음	별도규정 없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영수증만 교부 가능
납부 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공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비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공급대가의 0.5%
예정고지, 신고납부	예정고지징수(개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법인, 신규, 사업부진자)	예정고지징수 예정신고납부(신규자, 사업부진자)
납부의무면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제4절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간이과세(과세특례)제도가

32)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서울: 세경사), 2004, p.1269.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어왔다. 나오연(1984), 최광(1985), 김익래(1987), 이노창(1993) 등의 연구되었으며, 김정길(1985), 서희열(1986), 은정섭(1990), 등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등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나오연(1984)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며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일반과세자와의 세부담의 형평(수직적 공평)을 유지하고, 세금계산서의 수취율을 제고시켜 근거과세의 발전에 기여하고, 과세특례자의 개별적인 세부담의 적정을 기하고, 징세비와 납세비용의 절약을 기한다는 기준이 반영되게끔 고려하여, ① 소액면세범위의 확대, ② 매입세액공제에 의한 추계과세, ③ 특례범위의 현실화, ④ 표준신고율제의 폐지 등을 주장하며 존치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sup>33)</sup>

최광(1985)은 ① 과세특례를 없애고 전부를 일반과세 형태로 전환하고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만 차등과세를 강구하는 방법, ② 과세특례범위를 업종기준으로 전환하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세율을 차등화 하는 방법, ③ 과세특례구분을 업종과 금액기준으로 이원화하고 세율 및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 ④ 극히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일정규모의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중간단계특례를 두어 일반과세자 보다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 ⑤ 세율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복수로 조정하고 세금계산서의 제출공제율을 인상·조정하여 실질 세부담을 현재보다 낮추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의 세부담을 일반과세보다 높인다는 전제하에 과세특례범위의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의 다섯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sup>34)</sup>

김익래(1987)는 ① 과세특례기준의 재조정을 통한 불공평성의 해소방안으로 과세특례기준 금액의 재조정과 과세특례세율의 재조정, ② 세금계산서 수

33) 나오연, “부가가치세제상 과세특례제에 관한 연구,” 『경제논총』 제7집,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34) 최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소견,” 『조세논총』 제1권, 한국조세학회, 1985.

수의 정착화를 통한 근본과세 기반 구축 방안으로 매입세액 공제율의 인상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의무화, ③ 일정규모 미만의 과세특례자에 대한 납부면제 범위 현실화, ④ 기타 신규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적용과 일반사업자 선택권의 계속적 부여를 현행의 과세특례제도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보완책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sup>35)</sup>

이노창(1993)은 ① 과세특례제도를 없애고 다만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현재보다 좁혀 차등과세하는 방안, ② 업종간 부가가치율의 크기에 따라 차등세율을 검토하는 방안과, ③ 세율인상 및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방안을 제시하였다.<sup>36)</sup>

지금까지는 1996년 간이과세제도 실시되기 이전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이나 간이과세제도와 연결되므로 별 다를 바 없다. 순수하게 간이과세제도만 시행된 이후의 대표적인 선행연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현진권(2000)은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의 대상범위가 점차로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로 인한 사회비용도 점차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적 일정에 따라 과세특례제도가 확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제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를 축소하려는 행정적 노력이 있었으나, 커다란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또한 소규모사업자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하는 유인책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1999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정안에 대하여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에는 변화가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자 중 39.9%가 납부면제자이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과세특례자는 세부담의 증가가 거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도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세부담의 증가가 매우 작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37)</sup>

35) 김익래, “과세특례제도의 보완내용,” 『부가가치세제의 과제와 개선』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87.

36) 이노창, “소비세제의 개편방향,” 『세 정부의 체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한상공회의소·한국세무학회, 1987.

37) 현진권,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2000.

함영복(2001)은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포탈요인을 재무적 요인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하여 직접적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규모가 적은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 등의 규모가 적은 기업의 포탈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과 세무조사의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유통업인 도·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sup>38)</sup>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을 제시하였다.<sup>39)</sup>

안장남(2002)은 프랑스의 협의과세제도가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납세자는 성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세법체계

둘째,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제도

셋째,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대심적 경정절차

넷째, 적법한 과정을 통한 과세자료 수집절차

다섯째, 사전적·구체적·실질적인 납세자 권리보장절차

여섯째, 선의의 납세자를 우대하는 세법체계

일곱째, 납세자의 권리보호·보장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위원회 제도

특히, 과세표준의 확정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지고 또한 과세자료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수집되는 과세정보는 그 효력이 없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제도가 인상적이라 주장하였다.<sup>40)</sup>

38) POS시스템의 도입,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구축 등

39) 함영복, "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40) 안장남,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제5절 주요국의 소규모사업자 과세방식<sup>41)</sup>

부가가치세는 매상세(賣上稅)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적과세 효과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서 1955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현재로는 유럽연합(EC)공동체의 각 국가와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이 밖에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접세가 간접세 보다 우수하다는 Carl S. Shoup 권고에 입각하여 직접세 중심의 세제가 확립되어 있으나 1986년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성격이 같은 매상세를 시행하려 하다가 유통업계 등 반응에 부딪혀 시행을 미루고 있다가 1989년에 가서야 소비세로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기에 앞서 세계 주요국가의 부가가치세제 및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1. 프랑스의 과세방식

####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은 수입재화를 포함하여 프랑스 국내에서 기업체가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대가이나,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의료, 교육, 금융, 보험, 부동산거래 등에 대하여는 사회정책적 배려나 업무의 성격상 부가가치세 과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면세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프랑스 내에서 위와 같은 과세거래를 독립하여 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41) 일명진, “부가가치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p.5 송중식,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p.17. 再引用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1996

## 2) 세율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이 있는데, 표준세율은 20.6% (1995. 8. 1.부터 적용, 종전은 18.6%)이고 경감세율은 5.5%, 2.1%이다.

## 3) 면세·경감제도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1,350프랑<sup>12)</sup> 미만 사업자들은 세액이 면제되고, 연간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이 5,401프랑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을 특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연가 매출액이 50만 프랑 미만인 재화공급사업자 또는 15만 프랑 미만인 용역 공급사업자는 과세표준을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포르페제도(우리나라의 과세특례제도와 유사)를 실시하고 있다.

## 4)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과세방법은 협의과세제도, 간이과세제도 및 정상과세제도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협의과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이다.

협의과세제도는 연간매출액이 50만 프랑 미만인 재화 또는 15만 프랑 미만인 용역 공급사업자는 과세표준을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제도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한 과세매출액을 감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연간매출액 규모가 3백만 프랑 미만인 재화의 공급사업자 또는 90만 프랑 미만인 용역 공급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의 방법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신 정상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제도는 세액 그 자체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절차상의 부담완화제도로 프랑스에서 부가가치세 시행초기에는 정상과세제도와 협의과세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협의과세자의 증가로 복잡성이 야기되고 정부가 기업 관리 부실을 초래하고, 한계 정상과세자의 복잡한 신고절차와 제반 의무이행에

12) 현재 프랑스는 유로(EURO)화를 통용하고 있으며, 1프랑(FR)은 약200원이다.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어 사업자의 보호와 행정력의 능률적 배분을 위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바, 우리의 부가가치세 시행초기 일반과세와 과세특례제도의 2가지 유형으로 시작하다가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과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극히 영세한 사업자인 부가가치세액이 1,350프랑 미만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2. 독일의 과세방식

###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기업자가 국내에서 대가를 얻는 공급 및 기타 급부, 자가소비, 수입거래에 대하여 과세되고, 수출, 국제선 항공기 등은 국제적 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의료 교육, 금융, 보험, 부동산 거래 및 임대 등은 면세로 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와 수입업자이다.

### 2) 세율

표준세율은 15%이며 음식료품, 책, 신문, 의약품, 문화서비스, 여객운송 등에는 정책적으로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 3) 영세율과 면세

수출 또는 수출품의 임가공, EC내 거래, 해상운송 및 선박운송, 중앙은행에 의한 금의 공급 등에 대하여 영세율이,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보험, 기타 복지·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 4)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

당초 독일의 부가가치세 제상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우리나라의 과세특례제도가 독일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 즉, 연간 총매출액 1만 2천 마르크<sup>13)</sup>를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1만 2천 마르크~6만 마르크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례세율 4%를 적용하여 외형 과세해 오다가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1980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전연도 과세매출액이 2만 5천 마르크 이하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이 10만 마르크 이하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소액부 징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3. 영국의 과세방식

####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의 과정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고, 납세의무자는 과세공급 또는 과세공급을 의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 즉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의도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 기타의 단체를 포괄한다.

#### 2) 세율

세율은 기본세율로써 17.5%이다. 다만 기본세율이 25/100 상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3) 비과세 및 영세율

부가가치세제도상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조치가 인정되어 있다.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우편, 교육, 의료 및 복지서비스, 스포츠 및 예술활동 등에 대해서 비과세 되고, 식료품, 상하수도, 수출, 공공교통기관,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4)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

<sup>13)</sup> 현재 독일은 유로(EURO)화를 통용하고 있으며, 1마르크(MARK)는 약 700원이다.

영국은 부가가치세제상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으로써 완전한 면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연가 매출액이 4만 5천 파운드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기장이 요구되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 그렇지만 소규모사업자도 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등록, 기장 및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과세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4. 미국의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논의

미국의 세수구성(稅收構成)은 직접세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소비세로는 연방소비세, 판매세, 담배소비세, 주세, 총포세, 주연료세, 등이 있고, 개별 소비세로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석유류에 대한 것으로 주연료세, 연방소매세 가운데 석유류 관련세, 연방 제조자세 가운데 석유류 관련 조세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수준의 부가가치세는 없었으나 유럽 각 국의 도입에 자극을 받아 부가가치세 도입 논의는 수 차례에 걸쳐 논의되어 오다가 1979년에는 최초로 EC형 부가가치세의 도입 제안이 있었다. 1984년에는 재무성에 의해 바람직한 세제(稅制)의 한 가지로 부가가치세 도입의 가능성이 검토되었으며, 클린턴 정부하에서도 소비의 억제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면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 5. 일본의 소비세 및 소규모사업자 과세방식

#####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한 자산의 양도와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출한 외국화물이고, 납세의무자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 등 각 단계의사업자와 보세지역으로부터 외국화물을 인출하는 수입자이다.

유럽에서는 광범위한 간접세가 종전부터 존재하여 그것이 부가가치세로 변경되었으나 일본은 간접세가 없다가 최초로 소비세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다르

고 일본도 직접세 중심으로 세수(稅收)가 구성되어 있다.

## 2) 세율

일본의 소비세율은 5%(중전 3%에서 1997. 4. 1.부터 인상)로 여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3) 비과세·감면

영세율제도는 국내로부터 수출되는 자산의 양도 또는 대부, 외국화물의 양도 또는 대부, 국내와 국외 사이의 여객이나 화물의 수송·국제통신 또는 국제우편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외항선박 등의 양도·대부 또는 수리, 외국화물의 하역·운송 보관 또는 검수 등의 노동의 제공 등에 적용된다. 그리고 면세제도는 먼저 소비세의 성격으로부터 비과세 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 및 대부, 유가증권 등 및 지불수단의 양도, 대부금 등의 이자 또는 보험료 등, 인지 및 증지의 양도, 행정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는 사회정책적 배려로 비과세 하는 것으로서 공적인 의료보장제도에 관계되는 요양의료 또는 시설요양 등, 사회복지사업 및 갱생보호(更生保護)를 행하는 사업으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학교 교육과 관계되는 노동의 제공, 주택의 대부 등을 들 수 있다.

## 4)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

일본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제도, 소액부징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과세기간 매출액이 2억엔(중전 4억 엔에서 1997. 4. 1부터 인하)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간주 매입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1년)의 납부세액의 규모에 따라 중간신고를 생략하거나 그 회수가 정하여 진다. 소액부징수제도는 연간 과세 매출액이 3천만엔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는 불허되며 따라서 당해 사업자는 신고, 납부의무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 5개국의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만을 요약하여 그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면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8> 주요국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및 세율 비교(1)

국명	세율구조		특례제도	우리나라 특례제도와 유사점 및 상이점
	경감세율	표준세율		
프랑스	2.1% 5.5%	19.6%	협과과세제도 단순과세제도	협과과세제도는 특정업종의 일정한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식이며 단순과세제도는 인간 중 매출액이 50만 프랑 이상 350만 프랑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과세한다.
독일	7%	16%	간과과세제도	54개 특징사업자 그룹으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마르크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영국	5%	17.5%	소매상매출세액 계산특례제도 (세금계산서교부)	소매상은 매출세액계산 특례제도를 두어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여 영수증으로 교부한다.
일본		5%	면제제도 간과과세제도	납세의무 면제제도는 우리나라의 소액부징수에 해당되고 간과과세제도는 2억엔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한다.(우리나라와 계산방식만 다를 뿐 기본개념은 같다)
한국		10%	간과과세제도	직전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1) 김봉근, 『부가가치세 해설』, (서울: 영화조세법률, 2003), p.936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9> 부가가치세 시행 주요국가

국 명	시행년도	국 명	시행년도	국 명	시행년도	국 명	시행년도
브라질	1967	코스타리카	1975	그리스	1987	러시아	1992
덴마크	1967	콜롬비아	1975	튀니지	1988	태 국	1992
독 일	1968	칠 레	1975	헝가리	1988	우크라이나	1992
우루과이	1968	페 루	1976	일 본	1989	알제리	1992
프랑스	1968	온두라스	1976	말라위	1989	나이지리아	1993
네덜란드	1969	한 국	1977	세네갈	1990	몽골리아	1993
마다가스카르	1969	멕시코	1980	아이슬란드	1990	싱가포르	1994
스웨덴	1969	아이티	1982	캐 나	1990	중 국	1994
에콰도르	1970	파테발라	1983	파나마	1990	유고슬라비아	1995
룩셈부르크	1970	도미니카	1983	핀란드	1990	잠비아	1995
노르웨이	1970	이스라엘	1985	파라과이	1991	우간다	1996
벨기에	1971	필리핀	1986	남아프리카	1991	스리랑카	1997
이탈리아	1972	포르투갈	1986	베 냥	1991	콩 고	1997
영 국	1973	대 만	1986	말 리	1991	네 팔	1997
볼리비아	1973	뉴질랜드	1986	방글라데시	1991		
오스트리아	1973	스페인	1986	캐나다	1991		
니카라과	1975	터 키	1986	불가리아	1992		
아르헨티나	1975	모로도	1986	엘살바도르	1992		

\* 자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기본통계 (1999.10).

## 제3장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실태분석

### 제1절 과세유형 실태분석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변천은 앞의 제2장 제2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요약해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변천

실시연도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1977.7. ~ 1995.		○	×	○
1996. ~ 2000.6.		○	○	○
2000.7. 이후		○	○	×

1977년 부가가치세 시행년도와 1996년도 및 1999년 이후 2002년 말까지 전세사업자 및 과세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변동추이는 <표 3-2> 및 [그림 3-1]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전체인원은 1977년에 82만 명이었으나 1996년도에는 약 263만 명으로 220.7% 증가하였고, 1996년도 대비 2002년 약 396만 명으로 50.3%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 폐지로 인하여 기존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1999년 대비 2000년에는 36.2% 증가하였으며, 간이과세자도 1999년 58만 명에서 2000년에는 166만 명으로 186%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181만 명으로, 2002년에는 18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과세특례자는 1997년의 424%에서 1999년 말에는 37.4%로 하락하였다. 이는 과세특례적용 기준금액이 1996년 2기에 3,600만원에서 1997년 2기

에 4,800만원으로 인상조정 되었음에도 과세특례자의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은 계속된 물가상승으로 과세특례 적용기준금액의 실질가치가 기준금액 인상전의 금액보다도 낮아졌음에 기인한다.

<표 3-2>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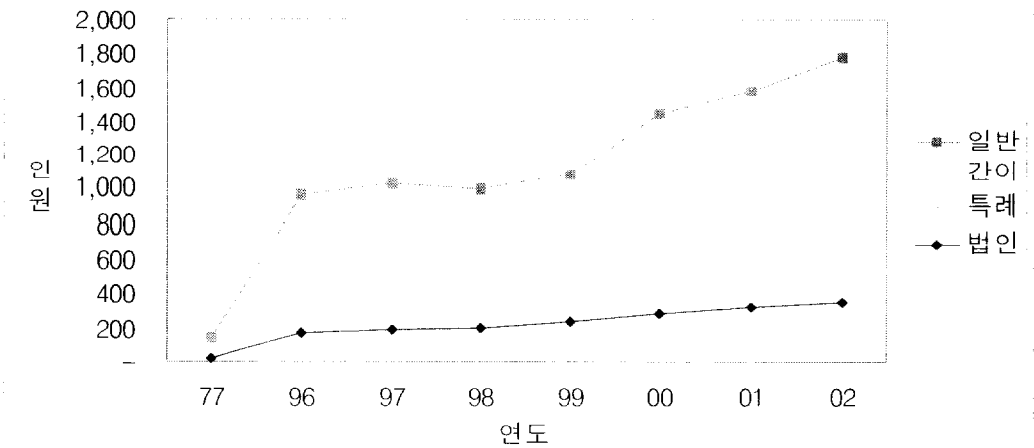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연도	유형	개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77		824	19	138	-	667
1996		2,635	165	947	265	1,258
1997		2,930	192	1,004	490	1,242
1998		2,855	197	979	546	1,132
1999		2,998	232	1,059	586	1,120
2000		3,390	278	1,442	1,669	-
2001		3,709	321	1,573	1,814	-
2002		3,963	345	1,775	1,843	-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2000.

[그림 3-1]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변동추이





## 제2절 과세표준 실태분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징수액은 1996년과 대비할 때 꾸준히 증가하여 과세표준 1,715조원과 부가가치세 징수액 약 31조원으로 1996년과 대비하여 각각 79.6%, 123.4%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결과이다.

<표 3-3>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인당 납부세액은 2002년에 800만원으로 2000년에 비하여 12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4억3천5백만원으로 2000년에 비하여 2천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과세특례자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들이 일반과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징수액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유형	과 세 표 준				부가가치세 징 수 액	1인당 납부세액	1인당 과세표준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1996		9,606	7,671	1,732	53 149	142	0.054	3.64
1997		10,859	8,816	1,751	132 158	194	0.066	3.71
1998		10,569	8,769	1,538	125 135	174	0.061	3.70
1999		11,717	9,598	1,821	158 139	210	0.070	3.90
2000		13,856	11,369	2,200	211 74	245	0.072	4.06
2001		15,153	12,433	2,454	266 -	279	0.075	4.08
2002		17,255	14,159	2,824	271 -	316	0.080	4.35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2000.

### 제3절 납부의무면제 실태분석

2000년 7월 1일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두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로 전환되었으며, 연도별 종전 소액부징수와 납부의무 면제대상금액과 인원의 변동추이는 <표 3-4> 및 [그림 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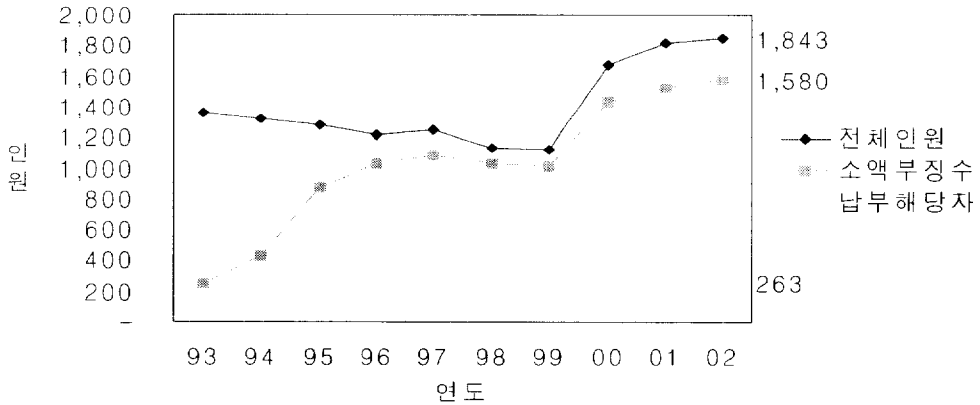
<표 3-4> 납부의무 면제대상의 변동추이

(단위 : 천명, 천원, %)

구분 연도	소액부징수 적용상한금액	간이(특례) 전체인원	소액부징수자		납부 해당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993	40	1,356	249	18.4	1,107	81.6
1994	60	1,320	429	32.5	891	67.5
1995	120	1,272	867	68.2	404	31.8
1996	240	1,210	1,031	85.2	179	14.8
1997	240	1,242	1,080	87.0	162	13.0
1998	240	1,132	1,027	90.7	105	9.3
1999	240	1,120	1,005	89.7	115	10.3
2000	12,000	1,669	1,426	85.5	242	14.5
2001	12,000	1,814	1,521	83.9	292	16.1
2002	12,000	1,843	1,580	85.8	263	14.2

\* 주 1) 소액부징수 상한금액 적용시점: 1990.1.1, 1994.1.1, 1995.1.1, 1996.7.1  
 2) 납부의무면제 상한금액 적용시점 : 2000.7.1  
 3) 2000년 자료는 1기 과세특례자와 2기 간이과세자의 합계이며,  
 2001년 자료는 간이과세자 자료임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3-2] 납부의무 면제대상의 변동추이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약 85%가 납부의무면제자이다. 소액부징수자가 1994년까지는 전체 과세특례자의 30% 정도였으나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약 90%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계속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소액부징수 적용상한금액을 1995년과 1996년 2기에 대폭 인상한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과세표준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액부징수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과세표준의 현실성이 없다는 단면적인 예이다.

#### 제4절 부가가치세 무신고 실태분석

##### 1. 세금계산서 수수실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납부세액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되

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세 부담 증가의 우려, 과세유형 전환의 기피, 무자료 매입시 저가매입 가능성 등의 이유 때문에 매입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취 거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화된 현실이다.

## 2. 부가가치세 무신고 실태분석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로 매출액이 노출된 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세액이 있는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간이과세자는 의도적으로 1과세기간의 매출액을 1천 2백만원 이하의 납세면제 대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앞의 제3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 하는 자에 대하여도 납부의무면제가 해당됨으로 인하여 <표 3-5>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전체인원의 약 8.12%인 5만 9천명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이는 간이과세자 전체인원의 약 10%를 초과하는 수치로서 법인 무신고비율 3.8%와 일반과세자 6.8%에 비하여 간이과세자는 너무 많이 부가가치세 무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매 과세기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표 3-5> 부가가치세 무신고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합 계		법 인		개 인		간 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납세자	734	100.0	51	100.0	233	100.0	360	100.0
신고자	675	91.9	49	96.2	303	93.9	322	89.5
무신고자	59	8.1	2	3.8	20	6.1	38	10.5

\* 주 : 무신고에 대한 자료는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나지 않음.

\* 자료 : 부산지방국세청 자체 통계 (2003.2기 확정분).

과세관청에서는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가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때 동봉한 사업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실적 확인서에 의거 기한 후 신고로 종결하고 있으나 사업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확인조사 정도 밖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이 무실적으로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수가 3만 6천명으로 전체 무신고자의 63.5%를 차지하며, 과세를 한 인원은 2만 3천명에 불과하다.

<표 3-6>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의 처리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

구분	무신고 인원	무실적자		과세처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추징세액
계	59	36	60.8	23	39.2	6,538
법인	2	1	51.0	1	49.0	2,123
일반	20	10	53.5	10	46.5	3,685
간이	37	25	65.1	12	34.9	730

\* 자료 : 부산지방국세청 자체 통계 (2003년 2기 확정분).

## 제5절 실태분석에 따른 문제점

### 1. 시장경쟁 중립성의 상실

제3절의 분석결과 나타난 납부면제 대상자가 85%이상을 점유하는 등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납세의 탈루가 일반화가 될 경우 성실한 사업자와 불성실한

사업자간 경쟁시장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불성실자에게 차별적 이익을 주게 됨으로써 성실한 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는 당초 간편 과세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편의 도모라는 취지에서 구상되었으나, 결정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는 세 부담 완화라는 차원으로 변질되었다.

<표 3-7> 1997년 업종별 부가가치세율<sup>15)</sup>

(단위 : %)

업종	부가가치율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율
제조	22	2	2.2	2.2	1.10
전기·가스·수도	21	2	2.1	2.1	1.05
소매	13	2	1.3	1.3	0.65
건설	37	2	3.7	3.7	1.85
음식	50	2	5.0	5.0	2.50
숙박	50	2	5.0	5.0	2.50
운수·창고·통신	50	2	5.0	5.0	2.50
부동산임대	43	2	4.3	4.3	2.15
기타서비스	40	2	4.0	4.0	2.00

업종별로 매입금액의 대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조·도매·소매업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매입금액이 적은 서비스업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금액 점유비가 적은 음식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7>에서 차이율을 보면 음식업 등의 경우 2.5배로 가장 큰 차이가 나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세부담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도입전의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일 때의 세부담 차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15) 서희열·김승철, "간이과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9호, 1997.

부가가치율이란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부가가치를 매출금액으로 나눈 비율.

부가가치율 = { (매출금액 - 매입금액) / 매출금액 } × 100 .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과세특례자에게 세부담에 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2. 세부담의 불공평성

조세제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평성의 개념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직적 공평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불공평이고, 수평적 공평은 간이과세자 상호간의 불공평이다.

<표 3-8> 2002년 업종별 부가가치세율<sup>46)</sup>

(단위 : %)

업종	부가가치율	①일반과세자	②간이과세자	③차이율 (1/2)	④간이과세자 (2004년 정상과세)	⑤차이율 (1/4)
제조	20.6	2.06	2.00	1.030	2	1.030
전기·가스·수도	10.5	1.05	2.00	0.525	2	0.525
소매	17.8	1.78	2.00	0.890	2	0.890
건설	36.8	3.68	2.25	1.640	3	1.220
음식	52.6	5.28	2.50	2.104	4	1.315
숙박	37.0	3.70	2.50	1.480	4	0.925
운수·창고·통신	46.5	4.65	2.50	1.860	4	1.160
부동산임대	21.0	2.10	2.25	1.050	3	0.700
기타서비스	35.6	3.56	2.25	1.780	3	1.180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전가할 수 있으며, 납세협력비용이 과세표준에 대하여 비례적이라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동일함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간의 불공평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

46) 나병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순응에 관한 실증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년. 정귀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再引用

으로 업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전가는 불완전하고 일률적이지 못하여 사업자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것이다. <표 3-8>에서와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면 2002년 및 간이과세제도가 정상과세되는 2004년에도 각각 차이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세부담의 불공평성이 나타난다.

### 3. 납부의무면제로 인한 과세형평성 상실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주어지고 있으나 그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고 더불어 이때에는 가산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소홀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부의무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무더기로 무신고 하는 등 세수효과도 없이 행정의 혼란과 행정비용만 가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납부의무 면제로 신규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게 되고 간이과세자가 된 후에는 납부의무면제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매출액을 축소신고, 무기장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인 납세 도의심 저하를 가져와 결국에는 성실한 납세환경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 세부담 원칙에도 역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4. 세금계산서 미수취

현재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을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현실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 세금계산서 수취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 이유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한 매출액의 추정이 가능하여 매출액이 노출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요구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풍토는 순조롭게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단전시키게 되어 근거과세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5. 낮은 납세의식 수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한 세무서의 간섭 없이 납세자의 신고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세액이 자진납부 신고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공동사회의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몫에 해당하는 부담의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국민은 불행히도 조선말기와 일제식민지배기의 수탈을 체험하면서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고,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납세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sup>47)</sup>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납세자들은 이 제도를 세부담 경감제도로 또는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 정도로 잘못 인식하고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간이과세자로 머물기를 바란다.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일반과세자로서 도저히 취급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위장하여 간이과세자로 은폐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47) 김종창,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국세, 1996, 7월호, p.54. 송중식,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64. 再引用

## 제4장 간이과세제도의 개편방안

### 제1절 공평과세에 대한 제고

‘공평과세의 원칙’은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 공평과세에는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각자는 동일한 금액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과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조세 부담을 낮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가벼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이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제도를 살펴보면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이들간에 세부담의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부가가치를 가진 간이과세자 상호간에도 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이 생기게 된다.<sup>48)</sup>

다음에서는 이러한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수직적 불공평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른 경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간에 심한 세부담 불공평 현상이 생기게 된다. 부가가치세율은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한 반면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이론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고,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전가할 수 있으며, 납세협력비용이 과세표준에 대해 비례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세부담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의 불공평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48) 송중석, 앞의 연구논문, p.60.

10%이나 사실상 실효세율은 2~4% 이다.

<표 4-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불공평성 비교<sup>49)</sup>

부가가치율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	세율	세액	매출액 기준 실효세율	부가가치 기준 실효세율
20%	일반	200,000	40,000	10%	4,000	2%	10%
	간이	30,000	6,000	10%	600	2%	10%
30%	일반	200,000	80,000	10%	8,000	2%	10%
	간이	30,000	9,000	10%	900	2%	10%
40%	일반	200,000	80,000	10%	8,000	2%	10%
	간이	30,000	12,000	10%	1,200	2%	10%

\* 주 1)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매출액) × 100

2) 매출액은 일반과세자가 2억원, 간이과세자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함

3) 매출액기준 실효세율 =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 × 100

4) 부가가치기준 실효세율 =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 × 100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의 계산은 공급대가에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납부세액의 계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표 4-1>에서와 같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기준 실효세율이 같아져 세부담의 불공평은 해소되고, 간이과세자로서 업종의 차이로 인한 부가가치가 다른 사업자간의 부가가치기준 실효세율이 같아져 세부담의 공평성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납부세액의 계산시 적용하는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율로 하도록 하였으며 그 율은 <표 4-2>와 같다.

49) 지용우,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p.50.

<표 4-2>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가치율 대비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가치율		평균부가가치율	
업종별	%	3년간	적용비율
제조업	20	21.73	92.03
전기가스·수도업	20	18.52	107.99
소매업	20	18.15	110.19
농·수렵·임·어업	22.5	28.20	79.78
건설업	22.5	34.08	66.02
부동산임대업	22.5	35.22	63.88
기타서비스업	22.5	36.48	61.67
음식업	25	51.66	48.39
숙박업	25	49.06	50.95
운수·창고·통신업	25	52.46	47.65

\* 주 1) 3년간 평균부가가치율은 1999~2001년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을 단순 평균한 것임

2) 적용비율은 간이과세자 적용부가가치율을 3년간 평균부가가치율로 나눈 것임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0~2002.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실제 적용할 부가가치율 3단계(20%, 22.5%, 25%)로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3개년간 평균 부가가치율과의 적용비율 차이로 인하여 간이과세자 상호간의 세부담의 불공평이 다시 발생되고 있다. 이는 같은 간이과세자간의 수평적 불공평이라 할 수 있다.<sup>50)</sup>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수직적 불공평에서 발생하는 실효세율의 차이는 소득세의 누진(累進)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수직적 공평과세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불공평의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세금계산서의 미발행·미수취 및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계속 안주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로 인한 세액의 탈루로 수직적 불공

50) 김현수, "부가가치세제상 간이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간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54.

평이 초래된다.

## 2. 수평적 불공평

같은 간이과세자간이라도 부가가치율이 다른 때에는 앞의 <표 4-2>와 같이 수평적 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제조, 소매 등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 숙박 등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에 비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적용 받음으로 인하여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납부세액의 계산 방식 모순으로 인하여 수평적 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일수록 더욱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한 무자료거래로 실제 매출액을 은폐, 거래에 대한 장부의 무기장, 위장 휴폐업 등의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 제2절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편의 제고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납세순응력이 미약한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및 납부, 경정, 징수와 환급에 관하여 일반사업자와 달리 예외적인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검토하여 유리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남고 불리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사업자의 애로점이 해소되며, 또한 세금계산서를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사업자도 이에 관한 불리한 점을 피할 수 있는데, 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의 일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구가 불필요한 실수요자와 주로 거래하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이·미용업 등에 유리하다.

반면에 불리한 사업자에게는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한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공제를 받게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부공제 받는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하다. 셋째, 채고납부세액이 많은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다섯째,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공급보다 수출비중이 큰 수출사업자는 불리하다.<sup>51)</sup>

위에서 불리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버리면 되지만 유리한 경우가 문제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계속 안주하기 위하여 자료분산, 위장거래 등을 하기 때문에 근거과세의 기본을 훼손하고 선량한 납세자에 악영향을 미쳐 조세풍토 전체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장부기장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예외적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자기의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조세납부를 위한 조세협력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형식이 요구되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를 귀찮게 여기고 기피하려고 한다.

간이과세제도는 이러한 납세절차나 형식이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잠정적으로 유보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세상의 제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중 거의 절반이 간이과세자이며, 제3장의 <표 3-6>에서와 2002년 간이과세자 전체인원 약 184만명 중 158만명(85.8%)이 납부면제 대상자라는 것은 납부 뿐 만 아니라

51) 박상근, "간이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유의점," 회계세무, 1996, 9월호, pp. 138-139.  
송중석, 앞의 연구논문, p.67. 再引用.

‘조세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는 인식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제3절 바람직한 간이과세제도의 개편방안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부터 개정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만큼 현행 부가가치세제도는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잘못된 부분의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없이는 급변하는 시장경제의 흐름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액의 계산을 위해서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구멍가게 형태의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많은 경우 이들에게 기장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강요할 경우 징세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조세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특히 부가가치세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컸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sup>52)</sup>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진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같은 종류의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를 극복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영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를 면세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간편한 과세방식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사용하다가 1980년에 폐지한 과세특례제도를 채택하였는데 이 제도 하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은 거래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하게 하고 있으며 송장 또는 정식의 세금계산서 대신에 간편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어민을 면세사업자로 한 것은 농수산물의 소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보다는 사

52) 박태원, 앞의 책, p.143

실상 조세행정비용 또는 납세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므로 우리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도는 영국식의 면세방식과 독일식의 과세특례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세계의 주요국에서도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이 많은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 단순히 폐지하자는 주장보다는 ‘공평과세’와 ‘납세의무면의’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하여 현행 간이과세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간이과세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일반과세자로 단일화할 경우와 간이과세제도를 부분적으로 개편할 경우의 3가지 경우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현행 간이과세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간이과세제도의 도입 목적은 특정한 계층의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라는 분배적 차원의 조치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진정한 의미의 간접세라면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은 징세 또는 납세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운용이 원래 이 제도가 갖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 및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제도의 적응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장, 그리고 신고 등 납세절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행정적으로도 비용을 극소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의도했던 것이든 아니든 간에 간이과세자 등의 세부담이 현저히 낮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는 특례제도를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혜제도로 대다수의 당사자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3)</sup>

앞서 살펴 본 간이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53) 박태원, 앞의 책, pp. 114-115.



납세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높여야 한다. 즉, 납세자가 조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납세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여부는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리의 세무행정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첫째, 세법의 법적 안정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둘째, 세제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왔다는 점이고, 셋째, 조세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현저한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우리사회는 조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4)</sup>

신용카드사용의 급증으로 자영업자의 납세의식을 자연스럽게 제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附加法 32의2)’ 등 세법상의 우대조치는 자영업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조세저항 없이 세수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조치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인상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sup>55)</sup>

당초 과세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시된 존속방안을 보면 외형기준 인상안, 업종기준 개선안, 업종과 외형 두 가지 기준 개편안, 차등세율제 개편안 등이 제시되어 왔다.

54) 고상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p.72.

55) 노태주, “신용카드 사용과 조세정책,” 『세정연구』 제2호, 국세청 세정연구회, 2002, p.44.  
신용카드별 수수료 요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0%의 마진을 가진 판매회사가 신용카드 수수료 2.5를 부담한다면 결국 7.5%의 매출이익으로 영업상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드사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의 1%로 수수료 요율에 비해 너무 낮은 편이다.

특례범위의 인상 방안은 납세현실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자와의 마찰이 축소되는 이점은 있으나 과세특례 범위의 확대가 결국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을 후퇴시킨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였고, 차등세율제의 경우 현행 간이과세제도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앞의 <표 4-2>에서와 같이 수평적 불공평이 발생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게 된다.

국민의 납세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유치원부터 납세의식에 대한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및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對國民) 홍보활동과 각종 캠페인으로 국민 각자가 성실한 납세의식을 고취하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홍보와 납세의식 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sup>56)</sup>

결국, 납세의부편의 측면을 고려해 현행 간이과세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성실신고 풍토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변여건조성과 시스템의 도입 및 납세의식의 전환 없이는 공평과세측면은 완전히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2. 간이과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할 경우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특례제도로 시행되었으나 도입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을 절감한다는 취지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 동안 수 차례 법개정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나, 간이과세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세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의 매출누락과 세금계산서의 수수기피 등 바람직하지 못한 납세풍토

56) 노태주, 앞의 연구논문, p.12.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납세홍보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전 국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교육부 등 타 부처와 납세교육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일선세무서에 납세홍보부서를 신설하여 단계별 세금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납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조세지향 없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를 조성하게 되어 상거래 질서를 혼란케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전제인  
근거과세의 확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하여는 많은 조세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여하튼 간이과세제도가 영세한 사  
업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조세피난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세한 사업자로 위장한 간이사업자의 탈루」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불공평」의 문제로 연결되어<sup>57)</sup> 수평적  
불공평이 생기게 되어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간이과세자를 없애고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전사업자가 동일한  
세율과 과세방법에 의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근거과세 기능이 강화되는 등  
당초 부가가치세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일반과세자로 전  
환되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면 새로운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당초 도입취지인  
납세의무편의 측면은 완전히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 주요국가에서도 방법은 각기 다른 형태이  
지만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제도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영국과 같이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록의무  
및 기장이 면제되는 완전면제제도의 새로운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는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평과세의 실현과 근거과세의 확립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납세의무편의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너무 한쪽 측면으로만 기울  
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만약 간이과세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면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올바른 부가가치세의 인식 변화 문제와 완전면제제도의 새로  
운 도입 문제들이 부담스러운 과제로 남게 된다.

### 3. 간이과세제도를 부분적으로 개편할 경우

57) 권기재, “세원관리의 위기 그리고 대진환.” 『세정연구』 제2호, 국세청 세정연구회, 2002. p.81.

조세의 중·장기적 개선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첫째로 “세제의 단순화를 통해 계층 간 공평과세의 실현” 해 나가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쉬운 세법”<sup>58)</sup>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법의 복잡성 때문에 납세자들을 조세제도가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연구에서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중 세법의 복잡성이 조세회피의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또한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과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의 위배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도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세이론가나 정책입안가들은 세법의 복잡성이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주장하면서 특정계층이나 이해집단을 위한 시혜(施惠)적인 생각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들은 신중해야 한다.<sup>59)</sup>

앞의 제3장 <표 3-6>에서와 같이 전체 간이과세자 184만명 중에 158만명(85.8%)이 납부면제자라는 사실은 시장경쟁 중립성 및 세 부담의 공평성을 상실하게 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넓은 세원’을 위하여 현행 납부면제 상한선을 하향조정 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람직한 방안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성실신고 풍토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변여건조성과 시스템의 도입으로 납부면제자에 대한 매출액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매출액 및 거래의 양성화가 이루어지면 급격한 세 부담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화의 정도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의 인하를 검토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제시도 있다. 이 의견도 타당하지만 넓은 세원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 경우에 대한 2차적인 문제이다.

다음은 제3장의 제4절과 같이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이다.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58) ‘넓은 세원’은 면세점을 낮추기보다는 조세관리기법의 개발로 은닉된 세원에 대한 과세정상화로 추진하여야 하고, ‘낮은 세율’이란 낮은 유효납세율·조세포착율을 감안한 세율(예를 들어 특별소비세, 부동산 산 임대업의 표준소득을 등)은 넓은 세원이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 경우 낮은 세율로 개정되어야 하며, ‘쉬운 세법’은 국민에 대한 과세관청의 봉사이자 책무이다.

59) 권기재, 앞의 연구논문, p.106.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세액의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附加法 29 (1))라고 되어있으므로 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소홀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납부의무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무더기로 무신고하는 등 세수증대의 효과도 없이 행정의 혼란과 행정비용만 가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의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라고 법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sup>60)</sup>

또한 제4장에서 분석 검토된 불필요한 요소들을 줄이기 위하여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있는 사항을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과세기간”을 한꺼번에 1년에 한번만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편의와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附加法 27 (5))라고 되어 있어 6개월의 과세기간 단위로 1년에 2번 신고하게 됨으로써 납부의무면제자가 대부분인 간이과세자들의 납부세액 없는 신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2기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개정되어야 한다.<sup>61)</sup>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내용과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납세의무편의를 강화할 수 있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매출액 양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들의 시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평과세실현과 조화를 이루어 보다 합리적인 간이과세제도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60) 부가가치세법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제1항에 대한 개정안임

61) 부가가치세법 제27조(신고와 납부) 제5항에 대한 개정안임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대체로 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장경쟁의 중립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기피로 인한 근거과세를 저해하기 때문에 등 나열식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는 조세평등주의에 근거한 ‘공평과세의 원칙’과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인 ‘납세의무편의’라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부의무편의라는 두 가지 측면을 조화 있게 절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제도나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현금영수증제도 등은 매출액의 양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 중이므로 점진적인 매출액의 양성화는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바른 납세의무편의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한 잘못된 인식변화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며, 납부의무면제 대상자가 신고의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조세정책의 선택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던지 시행되어야 할 조세정책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문제의 발생이 예상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할 일들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예방책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공평한 조세행정'과 '납세서비스 행정'을 동시에 충족되는 조세제도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조세평등주의에 근거한 '공평과세원칙'의 조세정책 방향과 당초 제도의 도입취지인 '납세의무편의' 도모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시행이 예상되는 조세정책 별로 접근해 보았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에서 도출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만 접근되었다. 이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질 이상적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로 과제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곽태원, 『조세론』, 서울 : 법문사, 2000.
- 김봉근, 『부가가치세 해설』, 서울 : (주)영화조세통람, 2003.
-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서울 : 세경사, 2004.
- 서희열, 『소비세제법』, 서울 : 세학사, 2002.
- 양대석, 『부가가치세법 강론』, 서울 : 경영과 회계, 2004.
- 오기수·임종은, 『부가가치 세법강의』, 서울 : (주)영화조세통람, 2004.
- 윤덕병·성동환, 『부가가치세법』, 대전 : 대경출판, 2003.
-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서울 : 법문사, 2002.
- 최명근, 『세법학 총론』, 서울 : 세경사, 2002.
- , 『부가가치세법론』, 서울 : (주)조세통람사, 2001.
- 함영복,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서울 : 경영과 회계, 2004.

### 2. 논 문

- 고상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 권기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연구 :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1.
- , “세원관리의 위기 그리고 대전환,” 『세정연구』 제2호, 국세청 세정연구회, 2002.
- 권영모,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제5집, 1997.



- 김익래, "과세특례제도의 보완내용," 『부가가치세세의 과제와 개선』,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87.7.
- 김현수, "부가가치세제상 간이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 나오연, "부가가치세제상의 과세특례제에 관한 연구," 『경제논총』 제7집,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 노태주, "신용카드 사용과 조세정책," 『세정연구』 제2호, 국세청 세정연구회, 2002.
- 박종수, "유럽연합(UE)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 서희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와 회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6.
- 서희열·김승철, "간이과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 연구』 제9호, 1997.
- 송중식,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 심현욱, "부가가치세에 관한 소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제5집 제1호, 2003.
- 안창남, "부가가치세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유경문, "납세자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세제·세정개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경·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제17집, 제1호, 2002.
- 우무신,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방안에 관한 소고," 『동림경영연구』 제2편, 한국동림경영학회, 1995.
- 은정섭,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별 조세효과에 관한 분석적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0.
- 이노창, "소비세제의 개편방향," 『새 정부의 세제개혁 어떻게 하나』 대한상공회의소·한국세무학회, 1987.

- 정귀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 지용우,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 최 광, “부가가치세제 및 특별소비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소견,” 『조세논총』 제1권, 한국조세학회, 1985.
- 함영복, “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1.
- 현진권, “탈세요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현황과 개편방향,”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한국정책학회, 1998.
-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2000.

### 3. 정책자료 기타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 개정세법, 2004.  
           , 사업경영과 세금, 2003.
- 삼일회계법인, 조세법전, 각 년도.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1996.  
           ,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2000.  
           , <http://www.kipf.re.kr/>.
-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